



원 주 소 방 서



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사항 알림

1. 평소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.
2.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, 조치명령서 기한 내 완비하여 주시고, 완비 후 **‘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’**을 작성하시어 **관할119안전센터로 제출**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(경미한 사항은 제출하신 증빙자료로 확인예정이며, 중대사항 및 증빙자료 미제출 대상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확인 예정)
3. 또한,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 경우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48조의2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4.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수 없는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**조치명령 이행기간 5일전 연장신청이 가능**하오니 **관할 119안전센터 문의**바랍니다.
5. 기타 시정보완사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방안전과(☎769-1427~8)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- 불임
1. 조치명령서 1부.
 2. 행정심판안내문 1부.
 3.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 1부. 끝.

원 주 소 방 서 장



지방소방위 박호균

민원지도담당 교육

예방안전과장 김창섭 전결 2019. 11. 4.

협조자

시행 예방안전과-19662 (2019. 11. 4.) 접수

우 26482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1,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(명 룬동) / <http://wj119.gwd.go.kr>

전화번호 033-769-1427 팩스번호 033-769-1409 / bhg0727@korea.kr / 비공개(6,7)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

행정심판청구 안내문

귀 기관에서는 소방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(시정보완명령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1. 행정심판 재결청 :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
2. 행정심판 청구기간
 -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 -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
3.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: 원주소방서 또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
4.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: 서면으로 하되 행정심판법 제28조에 의함
5. 행정심판 청구자격 : 행정심판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함

□ 심판청구의 방식

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
2. 피청구인(원주소방서)과 위원회(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)
3.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
4.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
5.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
6.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

□ 청구인 적격

1. 취소심판청구
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2.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
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3. 의무이행심판청구
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
□ 청구기간

1.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
2.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

원 주 소 방 서 장

붙임 3

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

건 물 명			건물용도		
관 계 인 (대표자)	성 명		소방안전 관리자	성명	
	전화번호			전화번호	
소방공사업체		전화번호			
조치결과		조치명령 건별로 사진, 동영상(모바일),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			
<u>조치결과(예시) - 별첨 가능</u>					
1. 소화기구 교체 (개소)					
변경 전			변경 후		
2.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추가 설치					
교체 전			교체 후		
3. 감지기 교체 (개소)					
교체 전			교체 후		

자체점검 조치명령서

수령인	성 명 : 세원1공장 (대표자 및 소방안전관리자)	주민등록번호
	주 소 :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53	
조치명령 대상	대 상 : 세원1공장	
	위 치 :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53	
	대상인 : 관계인	
조치명령 구분	사 유 :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	
	내 용 : 붙임 보완사항 참조	
	방 법 : 조치명령에 따른 상기사항 보완	
	기 간 : 2019. 12.04.까지	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.

2019년 11월04일

원 주 소 방 서 장

직인생략

▶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해당 연장사유는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조치명령 이행기간의 만료 **5일 전까지 연장신청**이 가능합니다.

1. 태풍, 홍수 등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)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2. 관계인이 질병,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3. 경매 또는 양도·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
4. 시장·상가·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▶ 또한,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는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합니다.

시정보완 할 사항

세원1공장

설비명	시정보완 할 내용	위 치	대 책	관련 근거
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화기 1개 미설치 ○ 화재감지기(연기) 1개 미설치 ○ 외부방향 출구에 피난유도등 1개 미설치 	사무동 1층 시험실 후면 가설창고	설치요함	NFSC 101 NFSC 203 NFSC 303
연결 살수설비	○ 연결살수설비 송구구 나사보호용 마개 미설치 2개	사무동 1층	설치요함	NFSC 503